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963호(號) 1933(昭和 8)년 7월 26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45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98호(號)(조선총독부철도국[朝鮮總督府鐵道局]·함북자동차상회[咸北自動車商會] 간[間]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旅客及手小荷物連帶運送規則]) 중 1933(昭和 8)년 8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7월 26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3조(條) 연대운송(連帶運送)을 하는 범위(範圍)를 아래[左]와 같이 함.

1 여객(旅客)

가 국(局)의 부산(釜山), 대구(大邱), 대전(大田), 용산(龍山), 경성(京城), 평양(平壤), 신의주(新義州), 상인천(上仁川), 인천(仁川), 왕십리(往十里), 청량리(淸涼里), 철원(鐵原), 북계(福溪), 원산(元山), 함흥(咸興), 신북청(新北靑), 성진(城津), 길주(吉州), 명천(明川), 주을(朱乙), 나남(羅南), 북청(北靑), 도문선(圖們線)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 및 청진(淸津), 회령(會寧) 간(間)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과 상회(商會)의 나진(羅津), 청진(淸津) 및 웅기(雄基) 정류소(停留所)와의 상호간(相互間). 단(但) 청진(淸津), 웅기역(雄基驛) 및 자동차정류소(自動車停留所)로서 연대접속역(連帶接續驛)이 되는 경우는 해당(該當) 역소(驛所)에서는 연대(連帶)의 취급(取扱)을 하지 아니함.

나 상회(商會)의 청진(淸津), 웅기(雄基) 간(間) 자동차선(自動車線)을 중간에 포함하는 당국선(當局線)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 상호간(相互間)

다 국(局)의 부산(釜山), 대구(大邱), 대전(大田), 용산(龍山), 경성(京城), 평양(平壤), 신의주(新義州), 상인천(上仁川), 인천(仁川), 왕십리(往十里), 청량리(淸涼里), 철원(鐵原), 북계(福溪), 원산(元山), 함흥(咸興), 신북청(新北靑), 성진(城津), 길주(吉州), 명천(明川), 주을(朱乙), 나남(羅南), 북청(北靑), 청진역(淸津驛) 및 도문선(圖們線) 각(各) 역(驛: 경원역[慶源驛] 및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과 상회(商會)의 혼춘정류소(琿春停留所)와의 상호간(相互間: 경원역[慶源驛] 경유[經由]).

2 수하물(手荷物)

가 국(局)의 부산(釜山), 대구(大邱), 대전(大田), 용산(龍山), 경성(京城), 평양(平壤), 신의주(新義州), 상인천(上仁川), 인천(仁川), 왕십리(往十里), 청량리(淸涼里), 철원(鐵原), 북계(福溪), 원산(元山), 함흥(咸興), 신북청(新北靑), 성진(城津), 길주(吉州), 명천(明川), 주을(朱乙), 나남(羅南), 북청(北靑), 도문선(圖們線)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

驛]을 제[除]함) 및 청진(淸津)·회령(會寧) 간(間)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과 상회(商會)의 나진(羅津), 청진(淸津) 및 웅기(雄基) 정류소(停留所)와의 상호간(相互間). 단(但) 청진(淸津), 웅기역(雄基驛) 및 자동차정류소(自動車停留所)로서 연대접속역(連帶接續驛)이 되는 경우는 해당(該當) 역소(驛所)에서는 연대(連帶)의 취급(取扱)을 하지 아니함.

나 상회(商會)의 청진(淸津), 웅기(雄基) 간(間) 자동차선(自動車線)을 중간에 포함하는 당국선(當局線)의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 상호간(相互間)

### 3 소화물(小荷物)

가 국(局)의 부산(釜山), 대구(大邱), 대전(大田), 용산(龍山), 경성(京城), 평양(平壤), 신의주(新義州), 상인천(上仁川), 인천(仁川), 왕십리(往十里), 청량리(淸涼里), 철원(鐵原), 복계(福溪), 원산(元山), 함흥(咸興), 신북청(新北靑), 성진(城津), 길주(吉州), 명천(明川), 주을(朱乙), 나남(羅南) 및 북청역(北靑驛)과 상회(商會)의 나진(羅津) 및 웅기(雄基) 정류소(停留所)와의 상호간(相互間: 청진[淸津] 경유[經由]).

나 도문선(圖門線) 각(各) 역(驛: 웅기역[雄基驛] 및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 및 청진(淸津), 회령(會寧) 간(間) 각(各) 역(驛: 청진역[淸津驛] 및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과 상회(商會)의 나진정류소(羅津停留所)와의 상호간(相互間: 청진[淸津] 또는 웅기[雄基] 경유[經由]).

제4조(條) 중(中) 「중성(鐘城),」 및 「온성(穩城),」을 삭제(削除)함.

제8조(條) 승차권(乘車券)은 편도승차권(片道乘車券) 및 왕복승차권(往復乘車券)의 2종(二種)으로 하고,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旅客及荷物運送規則] 제14조(條)제1호(號) 및 제3호(號)에서 제5호(號)까지 정한 바[所定]의 것에 ㉞인(印) 기호(記號)가 첨부(添附)된 것을 사용(使用)하는 것으로 함. 단(但) 환상선(環狀線) 일주(一周)의 여객(旅客)에 대해서도 왕복승차권(往復乘車券)을 발매(發賣)함. 이 경우는 최종(最終)의 연대접속역(連帶接續驛)까지를 왕로(往路)로 하고, 잔여(殘餘)를 복로(復路)로 함.

제9조(條) 승차권(乘車券)의 통용기간(通用期間)은 국(局)·상회(商會)의 영업 킬로미터(杆程·km)를 통산(通算)하고,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旅客及荷物運送規則] 제15조(條)에 의해 이것을 산출(算出)함.

환상선(環狀線)을 일주(一周)하는 여객(旅客)에 대해서는 주유승차권[廻遊乘車券]에 준(準)해서 산출(算出)함.

제18조(條) 중(中) 단서(但書)를 삭제(削除)함.

제25조(條) 중(中) 「중성(鐘城),」 및 「온성(穩城),」을 삭제(削除)함.